

일본, 농업관련 지적재산에 관한 논의동향

성 명 환*

상공업에서 제도화되어 온 지적재산권제도가 농업분야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확립은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유화(enclosure)나 이익의 집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음식이나 환경에 직결되는 농업에서 보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일본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

1. 일본의 지적재산을 둘러싼 최근 동향

최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움직임이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다. 원래 지적재산권은 상공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발전을 지탱하는 발명이나 새로운 기술, 또는 브랜드 형성으로 이어지는 상표 등에 대한 권리로서 시대의 변천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점점 제도화 되어온 것이지만, 최근 후기 산업화, 정보화, 서비스화의 진전 속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이 지적재산권의 핵심적인 것이 특허제도이다. 일본에서 특허법이 정비된 이후 (현행 특허법 1959년 제정), 보호되는 대상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는 틀은 그 해석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특허법은 미생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mhsung@krei.re.kr 02-3299-4366

특허(1979), 유전자변형특허(1980), 소프트웨어의 매체특허(1997), 비즈니스 모델(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나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어 특허(1999, 2002)와 같이 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2002년 11월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한 때부터이다.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2003년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창설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지침계획이 발표되어 지적재산에 관련되는 각종 제도나 인프라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지적재산의 개념에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이외에도 지적창작활동으로서의 저작물(음악, 애니메이션 등), 의장(디자인), 식물의 신품종, 상표(브랜드), 그리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의 분야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 관련 국가정책이나 전략을 반영한 국내외적인 대응은 세계의 흐름보다는 다소 늦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의 시초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 미국의 레이건 정권하에서 진행된 지적재산 강화의 특허정책에서 발단했다. 당시 산업스파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일본기업이 특허 침해로 소송당하는 경우가 빈발하기도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영상·음악·브랜드품 등의 해적판(copy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외국기업과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시는 미국을 중심으로 범세계화의 전략으로 지적재산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이행하기 이전의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미국의 선도로 새로운 3가지 주제가 편입되었다. 즉, 지적재산권(TRIPS), 서비스(GATS), 투자(TRIM)의 세 분야이고, 이것들은 세계 무역구조의 새로운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WTO 체제하에서 각국은 무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세계경제 구조변화와 지적재산의 위치

세계경제나 무역의 동향은 서서히 확대되면서 크게 변천해 왔다. 세계무역량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지나지 않고, 공업 분야가 약 60%, 서비스분야가 20% 이상으로 증가해 있고, 그 질적 측면을 봤을 경우에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품질이나 디자인 등 지적 관련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국내총생산 (GDP)의 산업별 생산구조의 변화를 보면 제3차 산업(서비스 외)이 60%, 제2차 산업(공업)이 약 40%, 제1차 산업(농업외)은 몇 %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도 서비스 관련 부문이 GDP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공업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이행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선진국간 무역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의 70%), 농업분야 특히 많은 개도국과 관련이 있는 농업무역의 비중은 계속 정체되고 있어 WTO의 교섭에서 어려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각 나라에서 농업의 규모축소와는 정반대의 관계가 있어 농업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의 개발, 경제의 소프트화 · 정보화가 진행되고 또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적극적인 해외투자나 기술이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새로운 투자력, 금융 · 정보통신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확대, 그리고 특허를 비롯한 기술 · 개발력 · 지적재산에 상징되는 정보력이 경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UR에서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이라는 3개의 신분야를 편입한 것은 미국

이었다. 미국기업의 반도체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료 가격인상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배 강화, 상표·해적상품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저하되는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만회하고 앞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에서 전개해 온 것이다.

종래의 산업자체도 그 내용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하이테크화와 함께 생산비용 중 노동력 부분이 급속히 저하한 반면, 디자인·연구기술개발·판매·보수 등 서비스관련 부문은 60%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을 볼 때 지적 관련 분야의 상표, 저작권, 특허 등에 대한 보호강화의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이다. 즉, 지적재산의 보호강화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 세계화된 국제시장에서 그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형성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다.

3. 농업분야의 지적재산

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재산을 둘러싼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의 예로 일본에서 개발된 딸기의 신품종 ‘토치오토메’가 한국으로 유출된다거나 야마가타현이 개발한 체리 ‘베니슈우호오’(紅秀峰), 구마모토현이 개발한 고급 골풀 ‘히노미도리’ 등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일본의 농가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결국 브랜드 상품에서 해적판이 만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종묘법에 의해, 국제적으로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일본 와규(和牛)와 다른 종을 교배시킨 교잡송아지가 일본에 역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이른바 회색지대(grey zone)에의 대응뿐만 아니라 와규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해야만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관련된 움직임을 살펴보면 종묘법 개정(2005. 12 시행)으로 권리기간이 연장되기도 하고 권리의 범위도 돛자리나 팔소 등 가공품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또한, 상표법 개정(2006. 4 시행)으로 지역브랜드의 보호가 강화되었다. 국가의 정책적인 움직임을 봐도 2006년 6월에 농림수산성은 ‘지적재산전략의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농림수산물·식품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안전·안심 등 농림수산업·식품산업관계자의 노력이나 기술, 전통이나 문화, 소비자의 신뢰 등으로 지탱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특질·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3년 3월 지적재산기본법 하에서 지적재산권의 취득·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나 DNA 품종식별기술의 개발 등이 진행되어 일본 농림수산물 및 식품을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화 할 수 있는 환경이 급속하게 갖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성은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활용, 인재·기술 등 자원의 유효활용, 산지브랜드의 확립 등 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자산을 보호 및 강화하려는 추세가 현저해졌다.

WTO 체제하에서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의 움직임은 프랑스를 비롯한 EU가 추진해 온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가 있다. EU에서는 산악지 등 조건불리지역이나 농촌사회의 존속강화라는 사회개발적 시점에서 표시규제정책을 전개해왔다. 즉, EU 규제에서 산지특성이 명확한 치즈, 햄, 야채, 과일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명칭보호(AOP), 특정장소나 지역이 대표되고 있는 닭고기, 야채, 빵, 맥주 등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보호(IGP), 전통적인 상품으로서의 특성증명 등이 제도화 되어 왔다. 이러한 EU의 제도가 WTO 설립협정 속의 TRIPS 협정에 표시규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것은 지역특성이나 전통문화 등의 개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장구조를 다양화 하게 하는 한편, 일방적인 시장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러한 제도대응은 브랜드화 전략 등과 더불어 전개되고 있지만, 개도국에서 재래종이나 전통적 품종을 국제적으로

인지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적재산보호가 종묘 등으로 강화되는 움직임에 반하여, 외국기업에 의한 종자 특허의 사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서 농민의 자가채종이나 연구목적의 이용을 인정하게 하는 움직임도 나왔다. 개도국 중에서도 인도는 1999년 ‘식물품종 및 농민의 권리보호법’에 의해서 그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각 국가차원에서 옛날부터 농민사이에서 관례적으로 해 온 종묘교환이나 자가채취, 인근지역간 종자 주고받기가 지역적인 품종의 다양성을 확대해 온 경위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품·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2004년 발효)’에서 식품안전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작물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를 도모하는 다각적 시스템 수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영세농민이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이용하는 기회를 확보하여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이익의 공유화 도모 등, 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농민이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농업이라는 경영을 기업(비즈니스)적인 사유화로 발전시켜 갈 것인가, 농민이나 지역적인 공동체에서 공적 경영의 발전성을 도모할 것인가와 같은 이른바 세계관의 차이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생물다양성, 유전자원의 상실과 지적재산 문제

현재 인류가 직면해 있는 지구환경 문제로는 지구온난화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생물다양성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전, 둘째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문제,

셋째로 유전자원의 접근규제 문제, 넷째로 유전자원으로부터 국제적인 이익 배분 문제이다. 내용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이전, 접근규제, 이익배분에 관해서는 글로벌 경제사회의 진전 속에서 특히 WTO 체제와의 정합성이나 지적재산권과의 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해 품종개량이나 유전자조작에 따르는 “생명특허”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의 움직임은 동식물의 신품종뿐만 아니라 일부 조직의 유전자 자체까지도 특허에 의해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민이 종자회사에서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1차 산업분야에서 개도국의 국제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원래 세계의 생물종(유전자자원)의 절반 이상은 열대지역, 주로 개도국에 존재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유전자원을 확보한 후 새로운 개량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술적 특권을 확보해서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은 이것을 생물자원의 해적행위(Biopiracy)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등이 개도국 주민의 오랜 전통 속에서 보전·이용해 온 풍부한 생물자원을 채취하여 뛰어난 생명공학기술을 통하여 식품이나 의약품 등 상품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는데 대한 비판이다. 개도국은 생물다양성조약에 의해 그 이익에 대한 공평한 배분·환원이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배분에 관해서는 Bonn 지침서가 만들어지고(2004년)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생긴 이익을 공평·균형배분을 위한 제도 수립이 모색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에 의한 생물다양성에의 악영향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은 이동이나 취급을 정한 생물학적 안전성(Cartagena) 의정서도 체결되었다(2003년 발효).

세계 특허의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에서는 특허를 둘러싼 경쟁이 치

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고도기술의 독점적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한편, 재래품종이나 전통적 농업·농촌이 급속하게 붕괴하여 소멸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업과 농촌지역이 공업적인 시스템 속에 넣어져서 기술적, 경제적,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적으로 전세계적인 종속구조에 편입되려는 시점에 있다.

5. 장래 세계의 전망

지적재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바탕에는 장래 세계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인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다. 지적재산은 지금까지 내려온 물품이나 제품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사용하면 없어지는 배타성이나 사적인 개인에게만 귀속하는 독점적 성질을 넘어서 서로 공유한다거나 상호 개발 속에서 보다 창조적인 발전을 형성해나갈 다이나믹한 보편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재산의 원형은 언어나 문화·예술과 같은 무형적인 것에서부터 작물이나 가축 등의 유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자연과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과 그 영속성 속에서 생겨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음식은 역사적, 공간적으로도 다양한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현재 여기에 존재해 있다. 개성과 다양성이 서로서로 뒤섞여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풍족해진 걸로 보이지만 모든 것이 경제적인 가치에 가려져 상품화되는 속에서 사적이익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에 의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지역의 개성이나 자립성, 다양성이 급속히 소멸되어지고 한다. 지적재산을 인간의 본성에서 볼 경우, 사적인 이익추구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에 존재해

있는 공익이라는 관계성, 인류를 위해 보다 보편적인 공익성, 보다 넓게는 다양한 생물들과의 공존성이라는 자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자원이나 환경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적재산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古澤廣祐, “農業における知的財産の行方”, 「農業と経済」(2006년 12월호, 제72권 제15호) 발췌정리